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진상규명 신고기간 등 연장 〉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53호)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0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용혜인의원안], [권향엽의원안]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변경	5
2. 위원회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객관성 유지 의무 규정 신설	11
3. 진상규명 신고기간 등 연장	14
4. 위원회 활동 보고서 및 진상조사보고서 국회 보고 의무 부여	22
5. 진상규명 신고 활성화 홍보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규정 신설	25

[용혜인의원안], [권향엽의원안]

I. 제안경위

1. 용혜인의원안

가. 제 안 자 : 용혜인의원 등 19인

나. 제 안 일 : 2024. 9. 3.

다. 회 부 일 : 2024. 9. 4.

2. 권향엽의원안

가. 제 안 자 : 권향엽의원 등 17인

나. 제 안 일 : 2024. 9. 27.

다. 회 부 일 : 2024.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용혜인의원안

제안이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2년 10월 6일 진상규명조사 개시를 결정함. 그러나 현재 여순사건 위원회에 전체 신고 접수된 7,465건 중 처리된 건은 710건에 불과함. 현행법상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으

로, 기간 연장 없이는 사건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러한 여순사건 위원회의 낮은 사건 처리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현행법상 여순사건 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견제하거나 시정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는 관련 위원회가 국회에 매년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단 9회만 개최되었고, 그 중 6회가 서면 회의로 진행되는 등 제대로 된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에 인사추천권을 배분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간 및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에 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의 충실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기간을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5조제2항).

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시기 기한을 최초 진상규명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7조제1항).

다.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을 여순사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제3조제5항).

라. 위원회가 활동경과를 매년 1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마. 위원회에 독립적 업무 수행 및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의2).

2. 권향엽의원안

현행법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진상 규명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오는 10월에 해당 조사와 자료수집 분석 기간이 만료됨.

하지만,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해외에 있거나 군사기밀자료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자료수집과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와 함께, 조사규명 신고기간이 짧아 희생자들의 충분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여수·순천 10·19사건의 피해규모가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 접수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쳤음. 실제로 전남 지역과 유족들이 진상규명조사를 실시하는 사실 자체를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자 함. 더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상규명 신고의 활성화 등을 홍보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 변경(용혜인의원안 제3조제4항 등)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라고 함) 위원 자격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6인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용혜인의원안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 ③ (생략)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신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법제처장 및 전라남도지사 2. 국회가 추천하는 6명(대통령이 소

⑤ ~ ⑨ (생략)	<u>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 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 단체가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u> <u>3. 유족 대표</u> <u>4. 그 밖에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u>⑥ ~ ⑩ (현행 제5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u>
------------	--

현행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이라 함)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여순사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제처장 및 전라남도지사
2. 유족 대표
3.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그런데,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10회만 개최되고 그 중 8회가 서면 회의로 진행되는 등 제대로 된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국회에 인사추천권을 배분하여 견제와 균형을 통한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여순사건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6인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요건>

직책	현행	용혜인의원안
위원장	국무총리	국무총리
부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위원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제처장, 전라남도지사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제처장, 전라남도지사
	-	2. 국회 추천 6인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추천 3인, 그 외 교섭단체 추천 3인)
	2. 유족대표	3. 유족대표
	3.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4.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령 제3조)	(개정안 제3조)

※ 위원회 구성 인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임기 2년, 연임가능 법 제3조제5항)

먼저, 위원회 위원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된 위원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원 요건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²⁾ 개정안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의 준수를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 있는 성별고려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6인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제주4·3사건위원회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 구성 시 국회추천 6인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위원 구성 경로를 다양화함으로써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진상규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유사 입법례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이라 함)은 제주4·3사건위원회의 위원 25인 중 4인에 대해서만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원 15인 중 6인에 대해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에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은 현 위원 정수(15인)를 유지한 채 국회 추천 위원(6인)만 추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 위촉위원(9인)의 임기가 상당부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위원 구성의 변동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별 위원 구성 비교>

구 분	구 성	소 속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5인 이내)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회 추천 4인(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추천 2인, 그 외 교섭단체 추천 2인)	국무총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9인)	대통령 지명 1인, 국회 추천 8인(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교섭단체 추천 4인, 그 외 교섭단체 추천 4인)	독립위원회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9인)	국회 추천 9인(국회의장 추천 1인,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교섭단체 추천 4인, 그 외 교섭단체 추천 4인)	독립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9인)	국회 추천 9인(국회의장 추천 1인,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교섭단체 추천 4인, 그 외 교섭단체 추천 4인)	독립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9인)	국회 추천 9인(국회의장 추천 1인,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교섭단체 추천 4인, 그 외 교섭단체 추천 4인)	독립위원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7인)	국회 선출 10인(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교섭단체 추천 5인, 그 외 교섭단체 추천 5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인,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인	독립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8인)	국회 선출 5인(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교섭단체 추천 2인, 그 외 교섭단체 추천 3인),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인	독립위원회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여순사건위원회 위원 구성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원 구성의 엄중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현재도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안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위원 자격요건에 현행 시행령 제3조와 같이 “성별을 고려하여”가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여순사건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비중이 늘어날 경우 유족 대표에 대한 비중은 감소될 우려가 있어 국회 추천 6명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보장을 위한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위원회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객관성 유지 의무 규정 신설 (용혜인의원안 제3조의2)

개정안은 여순사건위원회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용혜인의원안
<신 설>	제3조의2(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국무총리가 여순사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위원장이 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령³⁾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제처장 및 전라남도지사
2. 유족 대표
3.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그런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원회의 실무조직인 보고서작성 기획단 내의 일부 위촉위원의 과거사 폄훼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여순사건위원회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여순사건위원회 운영의 객관성·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의 입법화와 관련하여 현재도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유사 입법례에 따른 위원회 등은 독립위원회임을 감안하여 해당 조항을 법률에 규정한 것임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 소속인 여순사건위원회에 대해 개정안의 내용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4·3사건법」은 제주4·3사건위원회 구성 시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독립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여순사건 유족 "진상보고기획단에 극우 인사…재구성해야", 뉴시스, 2024. 2. 28.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228_0002642545

<위원회 독립운영 등 조항 비교>

구 분	위원회 독립운영 등 조항	소 속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제7조(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조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독립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독립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독립위원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독립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독립위원회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여순사건위원회가 현행 법령하에서도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어 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3. 진상규명 신청기간 등 연장(안 제5조제2항 등)

개정안들은 진상규명 신고기간을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구성일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을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⁵⁾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권향엽의원안)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현 행	용혜인의원안	권향엽의원안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생략)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u>1년</u>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 ----- ----- <u>4년</u> ----- -----	② ----- ----- ----- <u>4년</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u>2년</u>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 ----- ----- ----- ----- <u>5년</u> ----- -----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 ----- ----- ----- ----- <u>5년</u> ----- -----

<개정안에 따른 신고기간 등 연장 현황>

구 분	현 행	용혜인의원안	권향엽의원안
신고기간	2022. 1. 21. ~ 2023. 1. 20.(1년)	2022. 1. 21. ~ 2026. 1. 20.(4년)	2022. 1. 21. ~ 2026. 1. 20.(4년)
조사기간	2022. 10. 6. ~ 2024. 10. 5.(2년)	2022. 10. 6. ~ 2027. 10. 5.(5년)	2022. 10. 6. ~ 2027. 10. 5.(5년)
보고서 작성기간	2024. 10. 5. ~2025. 4. 4.(6개월)	2027. 10. 5. ~ 2028. 4. 4.(6개월)	2027. 10. 5. ~ 2029. 10. 4.(2년)
여순사건위원회 존속기한	2025. 10. 4.	2028. 10. 4.	2030. 4. 4.

2024년 10월말 현재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신고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진상규명 신고 191건은 실무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진상규명 결정 실적이 없는 상황임.

희생자 신고의 경우 7,465건(명) 중 3,709건(명)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되어 여순사건위원회로 심의·의결 요청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1,884건(명)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는 바[인용 1,587건(명), 기각 34건(명), 취하 등 263건(명)], 2024년 10월말 현재 심사·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미처리 희생자 신고건은 실무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3,565건(명), 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 요청을 받았으나 심사·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1,825건(명) 등 총 5,390건(명)임.

임기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기로 동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개정안에 따라 여순사건위원회의 존속기한도 2025년 10월 4일에서 2030년 4월 4일로 변경됨.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 및 처리 현황>

<신고>

합계
7,465

<실무위원회>

희생자 신고		진상규명 (조사중)
조사완료	조사중	
3,709	3,565	191

<여순사건위원회>

합계	희생자 결정			취하 등
	소계	인용	기각	
1,884	1,621	1,587	34	263

주: 2024년 10월말 현재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접수 건수가 여순사건의 피해 규모에 비해 저조하고 2024년 10월말 현재 신고접수 건수 대비 진상규명 결정 실적이 부진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신고기간, 조사기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을 각각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추가 신고를 통한 진상규명의 양적 확대와 조사기간 연장을 통한 조사의 충실성을 담보함으로써 온전한 진상규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신고기간 연장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사항임.

여순사건의 피해 규모가 최대 2만 5천명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⁷⁾ 신고 접수건이 진상규명 191건, 희생자 심사·결정 7,274건 등 7,465건으로, 피해 인원 예측치를 토대로 추정한 사건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 목적의 달성이라는 정책적 고려에

7) 주철희,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법률안에 대한 진술서(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20.

따라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일정한 범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⁸⁾

그러나, 법 제정 당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 있거나 법 시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법 제정 당시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기간이 만료된 이후 피해 인원 예측치를 토대로 추정된 사건 규모 대비 신고 건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견이 제기될 소지도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1년)은 법 제정(’21.7.) 당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가 일정 수준 이루어진 점(1기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730건 1,237명)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현재 진상규명 접수된 진상규명 신고 191건을 포함하여 해외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기한 내에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현 시점에서는 진상규명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신고기간 연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현행법은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에 대해서는 신고나 심사·결정의 기한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 시행령에서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8) 신고 기간 연장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감안할 때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을 연계하여 함께 연장할 필요가 있음.

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제10조제2항), 진상규명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하위 법령 정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조사기간 등의 연장 필요성 여부에 관한 사항임.

신고기간의 연장과 별개로 현재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한 진행 상황, 향후 처리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조사기간이나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법 제3조제2항⁹⁾은 여순사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과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조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0월 5일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은 직접적으로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법 제3조제5항 단서에 따른 여순사건위원회의 존속기한인 2025년 10월 4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9)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6. 위령 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7.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
8.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9.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10.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②~⑨ (생략)

2024년 10월말 현재 미처리 희생자 신고건이 5,390건(명)에 달하고 그에 부수하여 유족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신고 191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 신고 접수된 진상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와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이 충실한 자료 수집과 분석, 검토를 통하여 차질없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고기간의 연장 여부와 상관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을 일정한 범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이나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의 추가적인 수요와 관련한 기간 연장의 정책적 필요성, 현행 규정에 따라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등 진행 상황, 향후 처리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 연장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진상규명 신고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기존 기한 내에 신고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되며,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진상조사 기한 연장도 일정한 범위에서 연장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연장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늦춰질 우려가 있고, 보고서 작성 기한 연장의 경

우에도 신속한 조사 및 용역 추진 등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으로 신중 검토 입장임.

다만,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함.

4. 위원회 활동 보고서 및 진상조사보고서 국회 보고 의무 부여(용혜인의원안 제9조제1항 등)

개정안은 제9조의 조제목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보고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으로 변경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1회 위원회활동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용혜인의원안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신설>	제9조(보고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 ----- -----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 ----- -----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법은 여순사건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여순사건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견제하거나 시정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여순사건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1회 위원회활동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먼저, 여순사건위원회 활동 보고서 매년 1회 국회 보고 의무 부여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입법화를 통해 여순사건 진상규명신고 처리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과거사 관련 법률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제외한 개별 과거사 관련 법률에 유사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라 여순사건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매년 1회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진상조사보고서 국회 보고 의무 부여와 관련하여,

여순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참고로 개정안의 입법화와 관련하여서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유사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국회의 관리·감독을 통해 여순사건의 충실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타 과거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진상규명 신고 활성화 홍보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규정 신설(권향엽의원안 제13조제1항 등)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권향엽의원안
제13조(위령사업) (생략) <신설>	제13조(위령 및 홍보사업)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2. 제1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의 홍보

현행법은 희생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무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희생자로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실무위원회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

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순사건의 유족들이 진상규명조사를 실시하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홍보를 통해 유족 등을 배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위령사업과 홍보사업을 같은 조에 규정하여 위령 및 홍보사업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고 보임.

개정안에 따른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의 홍보는 위령사업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홍보사업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별 과거사 관련 법률은 기념사업의 범위에 위령·추모사업이 포함되는 의미로 규정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고 개별 과거사 법률 중 홍보사업을 지원한 입법례는 존재하지 아니함.

<위령·기념사업 관련 입법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사료관 건립
3.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관리
4.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3사건 관련 기념사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4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추모묘역 및 위령탑
2. 그 밖에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② (생략)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2.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3. 위령공원 조성
4. 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

② (생략)

「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90조(기념·추모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진상규명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의 경우, 현행 시행령 제8조제7항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어 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한 홍보는 대상자가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자 중 지원 요건에 부합한 사람으로 홍보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개별 안내가 적합하다는 입장임.

또한, 과거사 법률(4·3사건법, 노근리사건법, 거창사건법)에 홍보사업을 지원한 입법례가 없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43